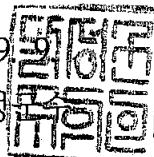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6
----------	-----

제출일자 : 2009

제출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제244호)에 따라 달성군 각종 공금의 수입·지출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용에 관한 경쟁방법의 평가기준 항목 보완, 수의방법의 요건 강화 및 심의  
위원회의 민간인 확대로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보완

- 평가기준(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지역주민이용편의성 등)  
항목 중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추가 및 보완

#### 나.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요건 강화

- 금고지정 시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수의  
계약 가능

⇒ 종전의 경우 1회 단독입찰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대구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에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 종전의 경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보완

- 위원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금고지정방법,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 ⇒ 종전 위원수는 9명으로 민간위원을 3분의 1로 구성함.

#### 4. 개정조례안 :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 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8. 7 ~ 8. 26)결과 : 의견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고지정”이란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쟁에 참여하여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1회에 한하여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여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구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군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치단체”를 “군”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7조제3항 중 “9인 이내” 를 “9인 이상 12인 이내” 로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과반수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달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9) - 자기자본이익률 (6) - 무수익여신비율 (7) - 대손충당금적립율 (3)		
		18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1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현황 및 군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10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군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정의)</p> <p>1.~4. (생략)</p> <p>5. (신설)</p>	<p>제2조(용어의정의)</p> <p>1.~4. (현행과 같음)</p> <p>5. “금고지정”이란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금고약정”이라 함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p>	<p>6. “금고약정”이라 함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p>
<p>제5조(금고의 지정)</p> <p>① (생 략)</p> <p>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p> <p>2. (생 략)</p>	<p>제5조(금고의 지정)</p> <p>① (현행과 같음)</p> <p>1. _____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1회에 한하여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3.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여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대구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군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평가기준)</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p> <p>3. 주민의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p> <p>4. (생략)</p> <p>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p>	<p>제6조(평가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군에-----</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p> <p>4. (현행과 같음)</p> <p>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p>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9인 이내</u>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생략) 2. (생략) ④ ~ ⑦ (생략)</p>	<p>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③ <u>9인 이상 12인 이내</u></p> <p>단, 민간전문가는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p>